

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방법 안내

- 자격증명 : 제한 / 육상 / 항공 무선통신사
- 교육기관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- 취득방법 : 온라인교육(국가기술험정 www.cq.or.kr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88-0013 (3번 ~ 10번) 문의
 ※※ 교육접수 후 30일 이내 교육시간 이수 (기한 내 1회 연장 가능)



구분	제한무선통신사	육상무선통신사	항공무선통신사
비용/시간	80,000원 / 8시간	90,000원 / 9시간	90,000원 / 9시간
운용범위	선박 또는 육상에 개설한 50와트 [W] 이하 무선설비	육상에 개설한 500와트 [W] 이하 무선설비	항공기국 등에 개설한 무선설비
시험과목	교육이수로만 자격취득	교육이수 후 전파법규(필기시험)	교육이수 후 전파법규, 영어(필기시험), 무선통신술(실기시험)
자격활용분야	○ 육상(지자체, 기업체 등)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 종사자로 근무 ○ 레저용 소형선박 운용	○ 이동통신사 및 협력사의 무선 종사자로 취업가능 ○ 육상에 설치된 무선국(지자체, 소방서, 기업체 등)의 무선종사자로 근무	○ 항공사 및 항공업체의 무선 종사자로 취업가능 ○ 레저용 경비행기 운용시 활용가능

- * 육상무선통신사 시험면제 :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후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통신운용 중인 자로 육상무선통신사 교육이수자
- * 해상무선통신사 시험면제 :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후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통신운용 중인 자로 해상무선통신사 교육이수자(KIMFT)

참고사항

어선법, 낚시관리 및 육성법, 수상레저안전법,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 등의 안전운항 및 육상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무선설비(무전기)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 허가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, 이 경우에는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배치되어 운영하여야 합니다.

- ▶ 무자격자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: 200만원 이하 과태료
- ▶ 자격증 취득(소지)자가 없는 경우 : 무선국 검사 시 불합격
- ▶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자격증 취소
- ▶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*자격검정 홈페이지: www.CQ.or.kr
 *문의: 1688-0013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 온라인 자격취득교육 안내 브로슈어 바로가기



선박 운항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방법 안내

● 자격증명 : 제한무선통신사

제한무선통신사 운용범위 : 선박 또는 육상에 설치된 50와트[W] 이하 무선국

● 교육기관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
● 취득방법

온라인 교육 :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(www.cq.or.kr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88-0013 (3번 ~ 10번) 문의

● 교육시간 : 8시간 (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, 기한 내 1회 연장 가능)

● 교육비 : 80,000원



참고 사항

어선법, 낚시관리 및 육성법, 수상레저안전법,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 등의 안전 운항 및 육상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외부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무선설비(무전기)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 허가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이 경우에는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배치되어 운영하여야 합니다.

- ▶ 무자격자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: 200만원 이하 과태료
- ▶ 자격증 취득(소지)자가 없는 경우 : 무선국 검사시 불합격
- ▶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자격증 취소
- ▶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